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5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3. 제안이유

소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소방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퇴직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소방안전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의 긍지를 향상시키고 소방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는 2015년에 설립되어 6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소방본부와 지속적 업무 간담회 추진으로 재직 기간 중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는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5. 31.~`24. 6.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퇴직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소방안전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방정책

에 활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